

제230회 정례회
2004. 7. 14 (수)

검 토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
관광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7월 5일
- 회부일자 : 2004년 7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개정(2003.5.29)으로 박물관 · 미술관업무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시·도로 이양됨에 따라, 박물관 · 미술관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함(제5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박물관 · 미술관 업무가 시·도로 이양됨에 따라 박물관및미술관
진흥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문화재위원회
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